

의안번호	제178호
의결연월일	2019. 12.04 .

_____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_____
 _____ 일부개정조례안 _____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1월 15일 논 산 시 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19년 11월 15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19년 12월 04일,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사회적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폐지에 따라 관련 법률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변경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용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의 연임차수를 두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“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3조” 를 “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” 로 수정함.(안 제1조)

- “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 및 제42조” 를 “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5” 로 수정함.(안 제2조제2호)
- 용자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차수를 규정함.(안 제13조제5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